

1. 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11.30. 공포, 2022.1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11.29. 공포, 2022.12.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12.1. 공포 및 시행)이 제정·시행에 따라서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의무화 등과 관련하여, 법률 제34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은 정하고 있으나, 이미 선임된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교육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16시간 받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담당 강사 기준을 확대함(안 제27조제7호 신설, 안 제30조제7호 신설)
- 소방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6종 → 7종)
- 나. 실무교육 수료 기준일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9조제3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

- 다. 실무교육 수료결과 통보일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안 제32조제2항)
 - 매월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15일까지 소방관서에 통보
- 라.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건축, 전기, 가스 등 시설 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소방관서장은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 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강습교육의 과목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소방시설자체점검표(작동·종합점검)로 수정함(안 별표 4, 안 별표 5)
- 바.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8시간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4시간),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16시간)로 구분하고 교육비를 명문화함(안 별표 6, 안 별표 9)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받은 사람,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실무교육을 면제함
 -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임된 자가 받는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함
- 사.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보완함(안 별표 10)
- 아. 별지 서식을 수정함(별지 15, 별지 17, 별지 18, 별지 23, 별지 2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9조제3항 본문 중 “6개월 이내”를 “6개월(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최초에 선임된 경우는 3개월)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무교육을 받”을 “실무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최초로 받은 실무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으로,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을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한”으로, “이수한 것”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단서 중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을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한”으로, “이수한 것”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제3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2조제2항 중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실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매월 수료자 명단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결과를 제출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건축·전기·가스 등 시설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의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소방시설자체점검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소방시설자체점검표”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소방시설자체점검표”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의 교육과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소방시설자체점검표”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교육과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소방시설자체점검표”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교육과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소방시설자체점검표”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교육과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소방시설자체점검표”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시간”을 “시간(법 제34조제1항제2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간”을 “시간(법 제34조제1항제2호 가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법 제34조제1항제2호 나목)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소방 관계 법령 나.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라.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마.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바.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실습·평가 사.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자. 형성평가(수료)	16시간

비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초에 선임된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가 3개월 이내에 받는 교육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최초의 실무교육을 면제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특급, 1급, 2급, 3급)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다. 제2호에 따른 교육은 별표 5의 제2호에 교육운영방법에 따른다.

별표 9 제2호마목 중 “대한”을 “대한 최초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법 제3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으로, “사람”을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사람”을 “사람(마목 전단의 실무교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의 6.의 교육용기자재 등란 제6호 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가상체험(VR 등) 장비 및 기기”를 “가상체험 콘텐츠 및 체험장비”로 하며, 제4호의 수량란중 6.의 “1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성명”을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으로 하고, “생년

월일”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으로 하며,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기술인력(자격등급)“을 ”기술인력명“으로 하고, ”주소“를 ”자격등급(자격번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에 ”업무대행 선임여부“를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성명”을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으로 하고,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으로 하며,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응시자”란에 “[] 1차시험, [] 2차시험”을 신설하고 “응시장소(응시지역)”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주소”를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로 한다.

[] 특급 [] 1급 [] 2급 [] 3급			
[] 1차시험		[] 2차시험	

별지 제25호서식 중 “합격”을 “수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선임된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6 제2호의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란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로 하고, “법 시행규칙 제36조”를 “법 시행규칙 제29조”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경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7조(강습교육의 강사)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7. 그 밖에 소방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u>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② (생략)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u>6개월 이내</u> 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u>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u> 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u>강습교육을</u>	③ ----- ----- <u>6개월</u> (<u>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최초에 선임된 경우는 3개월</u>)이내-- ----- ----- ----- ----- ----- ----- ----- <u>실무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최</u>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초로 받은 실무교육을 포함한
다)을 받---- 강습교육 또는 실
무교육을 수료한 ----- 수료
한 것-----.

④

강습교육 또는 실무
교육을 수료한
수료한 것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경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6. (생략)

<신설>

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① (생략)

② 소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①·② (생략)

<신설>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실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매월 수료자 명단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

--.

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결과를 제출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건축·전기·가스 등 시설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과목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 방법	시험 시간
제1차 시험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50문항	선택형	120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및 안전관리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제2과목	소방기초이론	50문항		
		연소·방화·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 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피난안전구역 운영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제2차	제1과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	10문항	주관식	90분

시험	목	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실습·평가	10문항	서술형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제2과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체점검서식의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 방법	시험 시간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25문항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2과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25문항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 방법	시험시간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25문항	선택형 (기입 형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실습·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 · 실습 · 평가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작성 실습 · 평가		
	응급처치 이론 · 실습 · 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 실습 · 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 · 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 · 유지 실습 · 평가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 방법	시험 시간
제1과목	소방 관계 법령	25문항	선택형 (기입 형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실습·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 방 안 전 관 리 대 상 물 에 소 방 안 전 관 리 자 가 되 려 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60시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소방기초이론	
	연소·방화·방폭공학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피난안전구역 운영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 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체점검 서식의 작성 실습·평가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나. 영 별표 4의 1급 소 방안전관리 대 상 물 에 소방안전관 리자가 되 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80시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 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 가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다. 영 별표 4의 2급 소 방안전관리 대 상 물 에 소방안전관 리자가 되 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 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 가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라. 영 별표 4의 3급 소 방안전관리 대 상 물 에 소방안전관 리자가 되 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점검 · 실습 · 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 · 실습 · 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 · 유지 실습 · 평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작성 실습 · 평가	
	응급처치 이론 · 실습 · 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 실습 · 평가	
마. 영 제40 조의 공공 기관에 소 방 안 전 관 리자가 되 려는 사람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 · 평가	40시간
	형성평가(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 점검 · 실습 · 평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 · 실습 · 평가(피난약자의 피난 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 · 실습 · 평 가	
	소방시설자체점검표 및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 · 평가	
바. 법 제24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6시간
	응급처치 이론 · 실습 · 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 실습 · 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 · 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 · 유지 실습 · 평가	
라. 영 별표 4의 3급 소 방안전관리 대 상 물 에 소방안전관 리자가 되 려는 사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24시간
	형성평가(수료)	
	소방 관계 법령	
마. 영 제40 조의 공공 기관에 소 방 안 전 관 리자가 되 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	40시간
	소방시설 유지 · 관리	
	소방 관계 법령	

대행 감독 소방안전 관리자가 되려는 사 람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사. 법 제29 조 제1항에 따른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자가 되려 는 사람	형성평가(수료)	24시간
	소방 관계 법령	
	건설현장 관련 법령	
	건설현장 화재일반	
	건설현장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임시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평가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실습·평가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이론·실습·평가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형성평가(수료)	

2. 교육운영방법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편성기준

교육대상	시간 합계	이론 (30%)	실무(70%)	
			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60시간	48시간	48시간	64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24시간	24시간	32시간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 전관리자	40시간	12시간	12시간	16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업무 대행감독 소방안전 관리자	16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교육시간 합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해당 평가항목을 이수하

거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 다만,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과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법 제34조제1항제2호 가목)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업무 수행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및 교육 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 요령 자.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비고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 및 서식작성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법 제34조제1항제2호 나목)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소방 관계 법령 나.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라.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마.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바.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실습·평가 사.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자. 형성평가(수료)	16시간

비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초에 선임된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가 3개월

이내에 받는 교육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최초의 실무 교육을 면제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특급, 1급, 2급, 3급)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법 제34조제1항제2호 가목)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화재의 예방·대비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4시간

4. 교육운영 방법

- 가. 실무교육은 이론·실습 또는 실습·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평가는 교육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실무교육의 수료를 위한 출석기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평가의 경우에는 가목 후단에 따라 달리 정한 시간의 100퍼센트로 한다.
- 다. 제2호에 따른 교육은 별표 5의 제2호에 교육운영방법에 따른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1. 자격증 발급 및 시험응시 수수료

납부 대상자	수수료 금액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특급 제1차시험: 1만8천 원 특급 제2차시험: 2만4천 원 1·2·3급시험: 1만2천 원
나.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수첩형)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1만원

2. 교육비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96만원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8만원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4만원
라. 영 별표 4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만4천 원
마.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최초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법 제3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9만6천 원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만4천 원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마목 전단의 실무교육은 제외한다)	5만5천 원
아.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만원

3.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 이하생략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는 것
3. 실습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평가를 위한 교육 기자재 등을 갖추는 것
4. 교육용기자재 등

교육 대상	교육용기자재 등	수량
공통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소화기 실습·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실습·평가설비 4. 응급처치 실습·평가장비(마네킹, 심장충격기) 5. 피난구조설비(유도등, 완강기)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7. 원격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영상장비 및 콘텐츠 8. 가상체험 콘텐츠 및 체험장비	각 1개 1식 3식 각 1개 각 1식 각 1개 1식 1식 1식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평가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평가설비 5. 제연설비 실습·평가설비	1식 1식 1식 1식 1식
1급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평가설비	1식 1식 1식
2급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평가설비	1식 1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 임시소방시설 실습·평가설비 2. 화기취급작업 안전장비	1식 1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코드		처리기한 즉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상호				용도		
	소재지						
	건축물등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기타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관리권원분리 [] 해당	[] 복합건축물 [] 지하가		[] 도매·소매·전통시장			
	[] 해당없음	[]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신고인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업무대행 [] 해당 [] 해당없음	상호		면허번호(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기간	
		기술인력명		자격등급(자격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HP 자격번호		
	선임일자	자격등급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주소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증		[] 해당 [] 해당없음				
	선임증 등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증		[]발급 []미발급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미발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수수료 없음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	

작성방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위란을 적습니다.
-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란에 √표 합니다.
- 관리권원분리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임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소방안전	소방안전	업무대행
	부 터	까 지		관리등급	관리종류	선임여부
총 근무기간						
용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후단, 제16조제7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발급문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담당자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즉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상호 소재지 건축물 등 등급	용도	연면적(㎡) 바닥면적(㎡)
	[] 특급 [] 1급 [] 2급 [] 3급		
신고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성명 또는 상호·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주소		

선임증 발급	[]발급 []미발급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 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자가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앞쪽)

응시자 [] 1차시험 [] 2차시험	응시번호	시험장소(응시지역)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응시자 제출서류	1. 사진(가로 3.5cm × 세로 4.5cm) 2. 응시자격 증명서류	수수료 특급 1차시험 1만8천원 특급 2차시험 2만4천원 1·2·3급 시험 1만2천원
-------------	--	--

	(자르는 선)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특급 [] 1급 [] 2급 [] 3급 [] 1차시험 [] 2차시험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일시		
시험장소		

년 월 일

소방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

[] 특급 소방안전관리 [] 1급 소방안전관리 [] 2급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 3급 소방안전관리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쪽 수 :					결재			
작성연월일:								
번호	사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강습시간	강습지역	수료 일자	